

감정평가서

건명	정규남 소유물건 (2024타경15966)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서번호	3-241223-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경인지사



우)22704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65, 302호(검암동, 진영프라자)

TEL. 032-266-7923 FAX. 032-232-6442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최두선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경인지사 지사장 고영훈



감정평가액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9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정규남 (2024타경15966)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4.12.24	2024.12.24
		작성일	2024.12.2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8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80,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남 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본건 감정평가시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제시 받지 아니하였음.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근거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감정평가시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 적용이 적절하지 않고,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수익과 비용 및 환원이율의 변동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유사한 임대사례의 포착이 어려워 적용이 곤란함. 따라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동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는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라.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토지(대지권)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감정평가 기법상 감정평가액을 토지·건물로 구분하기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의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배분하여 표기하였음. 토지와 건물의 가격 배분비율은 한국부동산연 구원에서 제시한 토지·건물 배분 비율표를 참조하되,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참고 바람.

4. 기준시점 등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시점은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제시가 없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2월 24일로 함.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2024년 12월 24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대상물건의 확정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4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04)							
건물명 및 층·호수	신명베스트빌 제4층 제401호							
건물의 개 황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층수(지하/지상)	
	대	준주거	254.7			599.72	-/5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단지규모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2003.05.01	동수	세대/호
설비현황	난방설비	냉방설비	위생·급 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도시가스 설비	기타설비
	○	-	○	-	-	-	-	-
일련번호	층/호수	면적(m ²)			소유권 대지권 (m ²)	용도		
		전유	공용	합계				
가)	4/401	71.34	7.15	78.49	33.3327	다세대주택		
합 계		71.34	7.15	78.49	33.332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가. 물적 동일성 등 종합 의견

물적 동일성	제반 현황으로 판단할 때 물적 동일성 인정됨.
--------	---------------------------

나. 기타 참고사항

-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음.
- 대상물건은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 탐문, 외부관찰 및 인근 동유형의 표준적 이용, 건축물현황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귀 법원의 경매 진행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평가시 인용한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일부는 ** 표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가. 비교사례의 선정

1) 감정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원)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①	부평동 754-***	*/5/50*	58.72	다세대주택	법원경매	2024.03.08	172,000,000
						2002.09.18	(약 2,930,000)
②	부평동 674-*외	-/4/40*	63.4	다세대주택	법원경매	2024.02.22	161,000,000
						2003.04.08	(약 2,540,000)
③	부평동 633-*	-/2/20*	63.58	다세대주택	담보	2023.08.08	150,000,000
						2002.09.16	(약 2,360,000)

2)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부평동 605-**	2/20*	58.48	다세대주택	2024.03.29	158,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2002.02.09	(약 2,700,000)	
㉡	부평동 760-***	4/40*	65.24	다세대주택	2023.09.15	150,000,000	
					2003.03.22	(약 2,3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수준 및 경매낙찰가율

■ 거래가격수준

용도	거래가격수준	비고
다세대주택	전유면적당: @2,400,000원/m ² ~@2,600,000원/m ² 수준	-

4) 비교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 소재하는 구분건물 중 본건과 층별 효용도·위치별 효용도 등 제반 물적유사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이 높은 실거래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중에서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m ²)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m ²)	
㉠	부평동 605-**	2/20*	58.48	다세대주택	2024.03.29	158,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2002.02.09	(약 2,700,000)	

나. 사정보정

결정 의견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사정보정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 일련번호 가)/비교사례 ㉠

대상물건은 구분건물(다세대주택)로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인천 매매가격지수(연립·다세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1) 시점수정치 산출 (2024.03.29~2024.12.24)

$$\frac{2024년\ 11월}{2024년\ 2월} = \frac{96}{97.3} = 0.98664$$

※ 기준시점 : 2024.12.24, 2024년 11월 지수를 적용함.

※ 거래시점 : 2024.03.29, 2024년 2월 지수를 적용함.

2) 시점수정치의 결정

상기의 지수로 결정하였음(0.9866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

조 건	항 목	비교 사례㉠	일련번호 가)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0.97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차량 이용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하여 외부요인은 열세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1.02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건물의 노후도 등에서 우세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0	0.96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층별 효용 및 전유면적의 크기 등에서 열세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상물건은 거래사례와 대체로 유사함.
개 별 요 인 비 교 치		1.000	0.950	-

마. 산정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사례단가 (원/전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전유면적㎡)	적용단가 (원/전유㎡)
가)	2,700,000	1.000	0.98664	0.950	2,530,732	2,53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층/호수	전유면적 (㎡)	소유권대지권 (㎡)	적용단가 (원/전유㎡)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4/401	71.34	33.3327	2,530,000	180,490,200	180,000,000
합 계		71.34	33.3327	-	-	18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감정평가액(원)	180,000,000원
----------	--------------

2.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인근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평가사례, 경매시장 추이 등)를 종합 참작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끝.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2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40	674 신명 베스트빌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동 소	674	대	준주거지역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4층 제401호 2 소유권대지권				
	합 계						₩180,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남 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교육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서측에 인천1호선-동수역, 북동측 인근에 인천1호선, 1호선-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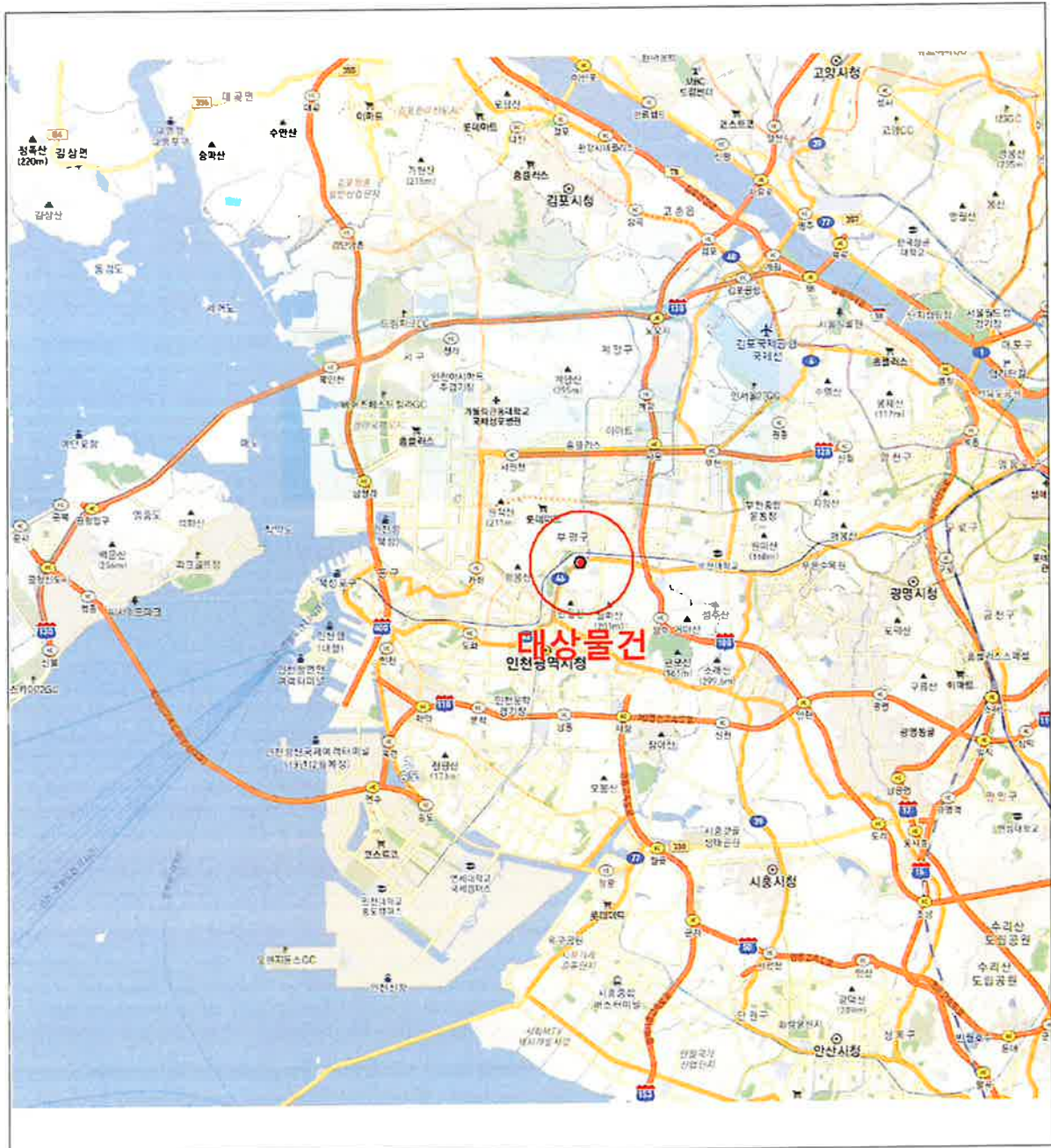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상세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4
신명베스트빌 제4층 제4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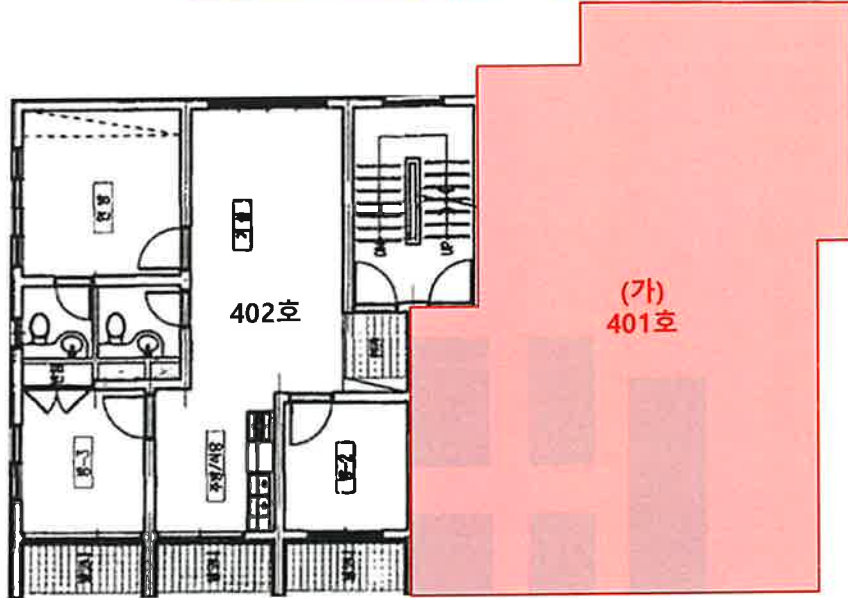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및 임대내역



신명베스트빌 제4층 제401호

No Scale



< 호 별 배 치 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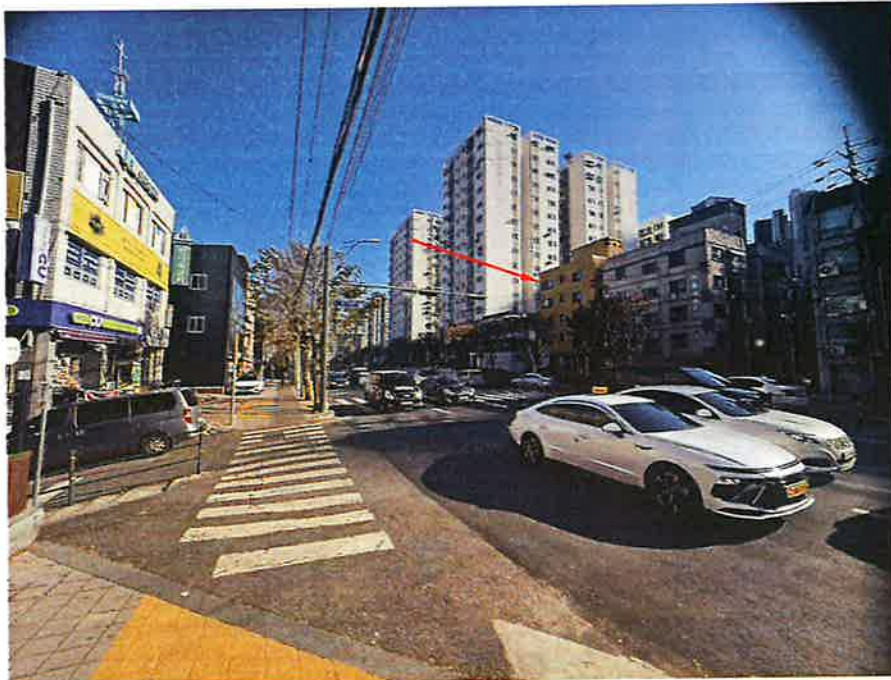


< 내 부 구 조 도 >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전경



대상물건 주위환경 촬영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공동현관문 촬영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출입문 촬영